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. 11. 17 선고 2017가합161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교회

변론종결 2017.10.20.

판결선고 2017.11.17.

주 문

- 1.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2.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제1항은 가집행 할 수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1.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, 원고가 2014.3.18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'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)을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(이하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재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,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.입증이 없다.

2.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 사 이 판 사 조 판 사 김

별지

목 록

1. 성남시 중원구 D 대 66.8㎡
2. 성남시 중원구 E 대 65.5㎡
3. 성남시 중원구 F 대 65.1㎡
4. 성남시 중원구 G 대 65.1㎡
5. 성남시 중원구 D, E, F, G 지상 연와조 스라브함석층 2층 주택 1동
1층 238㎡
2층 238㎡. 끝.